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30
----------	-------

발의연월일 : 2026. 9. 9.

발 의 자 : 서영석 · 전진숙 · 이수진

남인순 · 서미화 · 김 윤

허종식 · 朴芝源 · 소병훈

박용갑 · 김교홍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1조).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제3호 중 “수사”를 “수사(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보호조치) ① ~ ④ (생략)	제15조(보호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자(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 ----- 수사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포함한다)----- -----
⑥ ~ ⑪ (생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①·② (생략)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u>	③ <u>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u>
--	--